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59

발의연월일: 2021. 4. 16.

발 의 자: 박성중・윤창현・홍준표

양금희 · 장제원 · 김기현

유경준 · 김용판 · 김영식

곽상도·박대출 의원

(11인)

제안이유

ICT분야의 고도화 및 융합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및 시공은 급속히 전문화되고 있으며, 해당 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행위가 실제 시공 및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경우 기술기준 미준수로 인한 재시공, 미인증 ·비정품·저가제품 사용으로 인한 장비 호환 불가, 보안 취약장비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 및 발주자와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자격자가 정보

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과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 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
	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
	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
	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
	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u> 3의2.</u> (생 략)	<u>3의3.</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